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 공청회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

전남필

일시 : '97. 9. 1. 14 : 00 ~ 17 : 30

장소 : 통일교육원 강당

통 일 원

일 정 표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국민의례

개 회 사 :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사회 : 문용린 (서울대 교수)

14:20~15:50 <제 I 주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발표 : 박용현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 : 광병선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박도순 (고려대 교육대학원장)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

현학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의장)

15:50~16:00 휴 식

16:00~17:30 <제 II 주제>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발표 : 이우영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용욱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회장)

박석균 (한국자유총연맹 부설 자유민주연구소 소장)

윤병익 (통일교육원 교수)

차우규 (서울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회장)

17:30 폐 회

17:45~18:30 석 식

차 례

▣ 제I주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발 표 문 : 박용헌 (서울대) / 3

토론요지 :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 25

박도순 (고려대) / 29

현학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 33

▣ 제II주제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발 표 문 : 이우영 (민족통일연구원) / 39

토론요지 : 김용욱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49

박석균 (한국자유총연맹) / 55

윤병익 (통일교육원) / 59

차우규 (서울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 63

▣ 부 록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 / 69

제 I 주제

통일대비교육지언범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은 르 기 나 범 법 범 오 오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박 용 현

(서울대 명예교수)

I. 머리말

‘통일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인식이 고조된 까닭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주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최근에 와서 우리들의 통일의지와 자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통일회피 성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같은 우려는 최근에 실시한 조사연구들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젊은 세대 안에서 통일회피 성향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충격적인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통일교육의 효과를 의심케 하고, ‘통일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그 개선과 강화의 의지를 갖게 한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최근에 와서 조성되고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현실과 우리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통일대비교육을 체계화하여 종전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다고하여 통일이 외부에서 만들어져 주어지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 유리해지는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의 통일과업을 완성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의 향상도, 군사력·정치력의 향상도 다 중요하겠으나 이 모든 국력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중핵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같은 통일관련 정신력의 향상을 담당할 통일대비교육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할 것이며 남북간에 형성된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빠른 시일내에 회복하여 새로운 통일한국의 건설을 촉진하는 등 실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 지적한 두가지 이유의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게되던간에 종전까지 시도해 온 바와 같은 통일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하고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하는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에 통일원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화 조치 노력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절실한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원은 이러한 절실한 과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입법화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여러차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그 시안을 성안하고 그리고 몇차례의 공개적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이번과 같은 대규모 공청회에 제시하여 보다 더 철저한 논의와 검토를 바라고 있다.

본 주제는 그 입법화의 방향과 그 법안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거론하고 논의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이를 예시하자면 종전까지 시도되어 온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검토, 그 개선과제 모색, 통일교육의 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통일교육 방법의 개선 등등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삼스럽게 통일대비교육의 중요성을 논하거나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또한 통일교육을 종전 이상으로 강화해야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지만 이를 위해 전제가 되는 그 입법화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넓게 인식되어 왔으며 그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같은 종전의 방식에 결점이 있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면 될 것을 왜 그같은 교육의 촉진을 위해 입법화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그러했던 바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잘못할 경우 도리어 부작용을 빚게 할 것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나아가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입법화의 방향과 그 내용요지의 의미와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입법화의 필요성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Ⅱ. 입법화의 필요성

오래전부터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바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통일교육의 전반적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이러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의지와 자세는 약화되고 특히 젊은 세대안에서는 통일회피성향마저 확산되는 등의 우려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은 다양할 것이나 그들 원인의 핵심적 소재는 통일교육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양상의 제도적 장치로서는 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자명해진다 할 것이다.

이같은 가정 내지 전제적 진술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의 통일교육이 그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해명하면서 새로이 출범시키려는 통일대비교육을 다시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조치로서 그 입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합의기반의 취약성 극복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없이 실시되는 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오히려 실시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빚게 한다. 종전까지의 통일교육은 그 목표설정과 그 성격규정에 합의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시되어 왔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념과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이념과 일반교육 목표에 따르면서도 기본적인 대북관과 통일관,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 통일정책과 연계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목표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대북관과 통일관, 그리고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사실상 불충분했던 점이 사실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주도로 수립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은 여·야 정당간에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러한 정치 풍토 아래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되고 목표에 대한 합의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한다.

이러한 취약성과 결점을 극복하고 통일교육의 목표설정과 그 성격규정을 정당화하여 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는 이번에 제안하는 바와 같은 입법화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그 까닭은 입법화의 조치를 통해서 새롭게 시도하려는 통일대비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합의기반을 제공하고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왜곡과 오도 가능성 제거

통일교육의 목표설정과 성격규정에 대한 합의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고 통일교육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국민적 합의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주도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정권안보교육'으로 오인되어 시비의 대상이 된 바도 있었다.

이러한 시비로 인하여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직자를 '어용시'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고 남북관과 통일관을 달리 하는 학자와 교직자는 통일교육을 그들의 관점에 따라 이른바 '의식화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런 성향을 가진 교직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발에 의해 조사되고 구속되는 불행한 사례까지 발생한 바도 있었다.

종전까지 자주 빚어진 통일교육의 오해, 왜곡, 오도 등의 현상은 전향에서 지적한 '합의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 현상이지만, 그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한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 현상을 해소하는 최상의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화의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3. 통일교육의 내재적 취약성 극복

통일교육은 다른 영역의 교육과는 달리 특수한 내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내재적 특성이란 이념성 내지 사상성, 상대성, 시사성, 종합성 등이다.

통일교육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그 모순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전제적이고 사상지향적인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북한체제라는 존재를 전제하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해 오느냐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

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은 상대성이라는 특성을 갖게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한 이중성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은 북한이 6·25와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을 항시 경계해야 하고 때로는 '적'으로까지 간주해야 하면서 일면 그들을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족으로 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또한 국제관계, 남북관계, 남북 각각의 내부적 사정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사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기존의 어느 특정 학문체계와 분화된 어느 특정의 학계에만 따를 수 없고 인문·사회과학 전영역에 걸친 연구와 그들 다양한 학문의 공동연구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영역의 교육보다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상에 예시한 통일교육의 내재적 특성은 통일교육의 체계수립과 그 운영을 어렵게 하고 그 극복을 위한 많은 과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념적·사상적 관점에 따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며 그 관점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과 성격을 달리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념과 사상논쟁이 정치계에서 이따금씩 제기되고 대학가에서도 그같은 사상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통일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도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상대성과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사성, 그리고 모든 영역의 학문과 학계의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는 포괄성과 종합성 등은 모두 통일교육이 감당하고 해결해 가야 할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통일교육이 갖는 내재적 특성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그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모든 과제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치는 이번에 제안하고 있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교육이 갖는 내재적 특성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향의 입법조치 없이는 통일교육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4. 체계성과 지속성 보장

모든 영역의 교육이 체계화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요소들이 구비되고 그 요소들의 관계가 구조화되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할 전문요원이 양성되어야 하고 그 양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형성되어 오랜 연구결과에 의해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이 체계화되고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방법이 연구되고 다양한 교수·학습상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요소들은 단시일내에 구비되는 것이 아니며 제도화되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비되고 개선·발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그 같은 요소들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기존의 다른 교육체계의 일부분에 편승되어 취급되어 왔다. 오랫동안 통일교육을 전담할 요원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통일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중에 독립된 교과로서의 취급을 받아 본 적이 없이 도덕, 윤리, 사회생활 등 교과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교육내용 체계화와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체계도 수립되지 못하고 어느 기존의 학계에서 그 같은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본 일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하에서 시도되는 통일교육은 다른 영역의 교육을 위한 조치 이상의 특별한 제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대학에 그 교육을 전담할 학과 내지

전공과정을 설치하는 일에서부터 통일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계의 형성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각종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지속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며 그 조치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확산과 활성화 촉진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에 국한하여 실시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후 사회적 통합을 구축하는 과제는 전국민적 참여와 계속되는 노력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서두에 젊은 세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회피성향'을 지적한 바 있으나 우리들 성인층에서도 '안보불감증'이 만연되고 있으며 나라의 분단현실을 망각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상실하고 있는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정부만의 노력으로 바로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체제를 연상시키는 일이 되고 그러한 정부주도만의 노력은 오히려 그 효과성도 의문시될 것이다. 국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국가적·민족적 과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효과적이며, 오늘날의 추세에도 부합된다.

또한 우리가 통일을 이루었을 때 크게 두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도적 통합을 이루는 일과 심리적·정신적 통합을 이루어 국민형성을 하는 일이다. 여기서 심리적·정서적 통합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야 할 영역이다. 심리적·정서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복잡다기하게 제기될 과제들을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과정에서 경제통합도 자유민주주의 원리상 민간의 몫이 크며,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여러분야에 걸쳐 민간 부문의 역할은 실로 막대하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조하여 실시되어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사회교육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사회교육을 통한 통일교육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자료개발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며 교수요원의 확보와 많은 사회교육기관과 사회연구기관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지원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을 형성해가야 하며 많은 기관을 동원하고 총괄·조정·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회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과제를 정부주도로 수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랄 수도 없다. 사회교육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와 독자적 운영을 가능케 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민간단체들의 자율적 참여를 장려하여 각 지역적 사정과 요구에 맞추어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입법화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6.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앞서 예시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수많은 과제를 효과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종전까지의 통일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로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부처간의 협력과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며 통일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적도 많았다. 아무튼, 행정적·재정적 지원없이 통일교육의 개선과 그 효과적 추진은 불가능하다.

분단된 독일의 경우 서독에서는 초기부터 새로운 민주시민교육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시도해 오다가 1963년에 와서는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연방정치교육원'을 설립하고 그 후 각 주마다 정치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1966년도에 와서 입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예산지원도 확대해 갔다. 그동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일대비교육을 철저하게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동서독 주민간의 통합을 위한 교육적 과제는 과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통합교육 과제 수행을 위해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간 예산은 무려 7,200억원이라 하며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면서도 그같은 지원에 의한 교육은 앞으로 40~50년 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독일의 경우를 우리는 진정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Ⅲ. 입법의 방향

앞에서 입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그 방향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통일교육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그 효과를 저해해 온 장애들을 제거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롭게 요청되는 통일대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하는 방향으로 입법화 조치가 필요하다하겠다. 입법화 조치를 취하는 자체가 많은 장애요소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앞서 예시한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면서 통일대비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활성화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의 방향을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 지적해 두고자 한다.

1. 법적 정당화의 근거와 방향

종전의 통일교육이 안고 있었던 최대의 취약점은 그 목적과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이 미흡했던 점이다. 이러한 합의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통일교육의 효과는 저조해지고 오히려 온갖 오해와 왜곡, 오도 등의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결점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로서 이번에 시도되는 입법화 조치에서는 국민적 합의기반과 그 법적 정당화의 근거를 확인하여 그 근거를 명기하는 일이다.

실상 통일대비교육은 우리의 헌법에 명시한 국가적 의지에 따라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국민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충실한 추진은 대통령의 의무중의 하나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총강 제4조)라는 조항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일대비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향, 그리고 그 추진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수립된 최고의 법적기준인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통일대비교육은 합헌적이며 이번에 시도하는 입법화 조치도 헌법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통일대비교육의 기본방향과 성격규정

앞서 지적한 헌법조문이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통일대비교육의 기본방향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과거에 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실시된 통일교육은 여러 가지 오해와 왜곡, 오도의 가능성을 있게하여 혼란과 갈등마저 빚게 하였다. 이러한 종전의 결점을 시정하고 일정한 방향의 교육체계화와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통일대비교육의 기본방향과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3. 각계각층의 참여기회 확대

종전까지의 통일교육은 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권유지 차원의 교육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오해와 논쟁을 유발하여 통일교육 추진을 어렵게 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통일대비교육을 확산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이 추진하려는 통일대비교육의 기본적 정책과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립된 정책과 계획의 추진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참여와 평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주무부서와 그 기능의 명시

통일대비교육의 추진은 정부의 여러 부서는 물론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여러 사회단체와 기관의 공동노력을 필요로 한다. 통일대비 교육추진의 주무부서를 명시하고 그 부서가 담당하고 수행해야 할 업무와 기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주무부서로 하여금 정부의 다른 유관부서와 사회의 유관한 기관과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협력, 조정, 지원 등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교육의 주무부서는 통일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원이 되어야 한다. 통일대비교육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과는 물론 북한 관계 연구와 통일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시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통일대비교육의 주무부서는 통일원이 되어야 한다.

다만 통일대비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기획, 연구, 교수요원 양성, 자료개발과 보급, 교육·연수 실시, 타부서와 각종의 사회단체와 교육기관의 협력과 지원, 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효과의 진단과 평가,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 등의 실로 방대한 업무를 기존의 통일원 기구와 인적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를 명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그 기능을 예시해야 할 것이다.

5. 통일대비교육의 체계화·확산화·활성화 촉진

체계화란 통일대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은 통일대비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요소들이 구비되고 그 각각의 요소들이 체대로의 구실을 다 하면서 각 요소들간의 관계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을 뜻한다.

그리고 통일대비교육이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사회교육으로까지 확산되어야 하고 그 확산되는 양상에 따라 더많은 사회의 단체와 기관과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과제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통일대비교육의 체계화, 확산화, 활성화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개선과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정, 협력, 지원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

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전문성과 자율성의 신장과 보장

통일대비교육의 체계화, 활성화, 지속화를 위해서는 그 기획, 연구, 개발, 교육, 평가 등의 기능이 분화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전문성은 자율성과 신분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각 기능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그 자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하고 이들 전문인력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법안의 주요내용

통일원이 제안하고 있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앞서 검토한 입법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의 각항을 대체적으로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법안의 내용요지는 통일대비교육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그 추진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그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총 4장 1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그 법안의 장별(제1장: 총칙, 제2장: 통일대비교육기본계획, 제3장: 통일대비교육의 촉진·지원, 제4장: 보칙) 내용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총 칙

제1장 총칙은 이 법의 목적, '통일대비교육'의 개념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일대비교육의 합헌성 등 4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통일대비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라는 입법화의 목적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제2조에서 '통일대비교육'의 개념정의의 내리고 있다.

(1) 개념정의

'통일대비교육'이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념정의는 통일대비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의에 명시된 통일대비교육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이념(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과 통일에 관한 국가적 의지(헌법총강 제4조)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기본신념과 가치관,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대비교육의 목적 설정은 통일대비교육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일반교육의 최상위 목표와 통일대비교육의 목표와의 일관성을 밝혀 통일대비교육의 상위목표로서의 구실을 하도록 하기에 손색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정의는 통일대비교육의 목표와 그 성격에 관한 논란과 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교육대상과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목표 상세화를 위한 표준 내지 기준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특히 기존의 ‘교육법’과 ‘사회교육법’과 관련이 있게 될 것이며 법안을 잘못 규정하거나 잘못 운영하게 되면 혼란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제3조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가능성을 없게 하고 그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통일대비교육의 자율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며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그 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 내지 보충법적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따라서 ‘통일대비교육’은 ‘교육법’에 따라야 하면서 그 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통일대비교육지원법’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3) 합헌성의 확인

‘통일대비교육’이라는 개념의 정의(제2조)에서도 그 합헌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으나 제4조는 다시 통일대비교육의 합헌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4조는 “통일대비교육은 헌법에 규정한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개인적·파당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거에 이따금씩 야기된 바 있고 통일교육 실시를 어렵게 한 바 있는 통일교육의 오해, 왜곡, 오도, 이용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하고 있다.

총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조와 제4조는 ‘통일대비교육’의 합헌성과 합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통일대비교육의 추진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고 통일대비교육의 목적과 그 성격을 합헌적 근거를 토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오랫동안 통일교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통일교육에 관한 논쟁과 시비, 왜곡과 오도 등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통일대비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2장은 통일대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3개 조로 되어 있다.

제5조에 통일대비교육의 주무부서를 통일원으로 하고 계획수립의 주무책임자를 통일원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통일대비교육을 통일에 관한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통일대비교육의 과업이 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제5조 2항)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다.

제6조에 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수립하는 과정에 각계각층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서 합의의 기반을 넓히고 공고히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통일대비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구실을 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제6조 2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명문화하여 그 취지에 맞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7조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다. 통일대비교육의 계획과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방대한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어느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것을 명기하지 않는 한 이같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3. 통일대비교육의 촉진·지원

제3장은 국가의 임무(제8조), 통일대비교육의 실시(제9조), 학교에서의 통일대비교육 지원(제10조), 통일대비교육의 요청(제11조), 경비보조(제12조), 통일대비교육협회의 설립(제13조) 등 6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항은 모두 통일대비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국가의 임무

제8조는 국가는 “통일대비교육의 실시, 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지원, 경비의 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대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시하고 있다. 본 조항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통일대비교육과 관련한 과업을 교수요원 양성, 교재 개발 등 4개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왕이면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연구 촉진과 지원’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으면 한다. 예시한 교육 실시, 교재 개발, 교수요원 양성 등과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은 모두 연구업적에 의하여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본조항에는 통일대비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소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2항). 이러한 조치는 통일대비교육을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려 한 결점을 시정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방화의 조치의지는 제9조의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중앙과 지방에 설립되어 있는 정부의 교육연수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통일대비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들 기관들이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촉진과 지원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는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1항),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지원할 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교육 일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대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과의 설치에 학부과정에 전공을 세부화한 학과의 설치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넓게 확산되고 있는 조류를 감안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한 전공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해 둔다.

제11조에는 통일대비교육의 이수를 특정대상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대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대비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지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통일원장관의 자의에 따라 이 조항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본조의 2항에 “통일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대비교육 대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해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회 각계각층의 자율적 참여 권장과 지원

통일대비교육은 학교교육만을 통해서나 정부주도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적·국민적 공동노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통일대비교육의 활성화에 참여하고 그 교육의 일익을 맡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기대와 같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기존의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은 그들 고유의 업무수행만으로도 과다한 짐을 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과 같은 것이 필요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통일대비교육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제13조)는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와 기관, 혹은 독지가 집단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들 단체의 공동노력으로 통일대비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라 생각된다. 이같은 조직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통일대비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2조를 설정,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단체 포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보 칙

통일대비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합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추진과정에 입법화의 취지와는 달리 통일대비교육을 왜곡·오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서 제4장 보칙을 두고 있다. 제14조는 특히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이 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V. 맺음말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입법화 조치는 그 합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여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확립하고 통일대비교육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와 취지에 따라 설정하게 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들을 제거하고 통일대비교육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가 염원하는 방향의 통일을 앞당겨, 대망의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을 조성해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 제안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방향과 내용들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라 판단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법안의 내용중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주로 발표자의 설명능력의 부족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발표내용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기를 바라며 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입법화만으로 소기의 통일대비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그 법안의 취지를 심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운영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운영과정에 본 법안의 취지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토론 1-1〉

곽 병 선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1. 법안 제정의 기본입장에 대한 의견

다음과 같은 논거에 비추어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립하고 통일대비교육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국가적 의지를 분명히 세울 필요성이 있다.

나.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없이 실시되는 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대한 오해, 왜곡, 오도 등의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다.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은 정권안보교육으로 오인되기 쉬운 결점이 있다. 그리고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복잡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국가가 모두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각계각층의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그 활성화에 참여하고 교육의 일익을 맡을 수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참여도 촉진되어야 한다.

라. 통일교육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통일대비교육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가 염원하는 방향의 통일을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

2. 법안에 대한 의견

법안 가운데 다음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토론자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

가.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용어와 통일대비교육의 정의 부분

통일대비교육과 통일교육을 구분하여야 할 의미상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통일'대비'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주도·적극적이라기 보다는 피동·소극적 분위기를 준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구분하여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없다면, 통일교육지원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통일대비교육의 정의에 있어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에 강조를 두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어느 경우에서든지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려면 우리가 중요하게 유념하여야 할 교육의 일반적 원리, 즉 '신념 체계'의 함양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신념체계를 함양하도록 돕는 교육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우주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모순된 것이 무엇인가를 개방적으로 살펴 부단히 보다 올바른 인식에 접근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보다 올바른 인식에 접근하도록 돕는 데 성공하는 교육이야말로 민족교육, 통일교육, 과학기술교육 등 개체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그 어떤 교육 경쟁에서도 이기는 큰 길이다.

주제 발표의 글에서처럼 오늘날 일부 청소년에게서 통일회피성향이라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신념체계 함양에서 우리 교육이 무엇인가

올바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통일교육의 과제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념체계'를 위의 정의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관하여

합의된 교육목적의 부재, 또는 종래의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대처해 왔거나 또는 그러한 오용 가능성에 대한 시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본 법안의 중요한 취지가 있다고 하면, 이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바로 그러한 취지가 살아나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법안에서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토론자가 보건데 그 구성 요건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는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성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야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작업이다. 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바로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작업을 추진하는 중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양 기구는 그 위상에 맞도록 그 구성 요건을 명시하고,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심의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대표기관과의 연계문제이다. 즉 대통령이 일정수의 위원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한 여·야 정당에서 그 의석 비율에 따라 각각 일정수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며, 그 외에 통일교육관련 전문가나 기관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교육목표패널(National Educational Goals Panel)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심의회에서 토의·의결된 사항은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위원회의 위원도 심의회와 같은 맥락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 통일교육 주무부서 명시(5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법안의 제3장 통일대비교육의 촉진지원 부분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대비교육의 주무 부서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의 책임에 속하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은 상정되어 있다(5조-교육의 자주성, 6조-교육의 중립성, 7조-교육재정). 통일원은 그 위상에 맞게, 복잡하게 제기되는 통일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요구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위 통일대비교육심의회를 지원하고 이 심의회가 제안하는 각종 통일교육정책을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대비교육 기본계획에서 그 기본계획에 만약 교육과정이 포함될 경우 학교교육에 관한 한 '초·중등 교육법안' 제23조와 상충된다.

라. 통일대비교육의 잠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

원론적으로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통일되기까지이다. 통일이 되면 이 법안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대응조치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과 더불어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도기적 이행조치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 1-2〉

박 도 순

(고려대 교육대학원장)

‘법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을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 조치’를 통해 ‘통일대비교육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민간주도 통일대비교육을 지향’하려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통일대비교육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여기에서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당위성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면서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대비교육을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제반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교육문제(예컨대 북한 주민의 재사회화 문제 등)를 소홀히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비록, 준비라는 말속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일 후의 국가 모습에 대한 국가 비전의 제시가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후의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문제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대비교육의 개념 규정에서 ‘추진하고 준비하는 데’라는 용어는 삭제되거나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통일대비교육 목표에 대한 ‘합의기반의 취약성 극복’이 제시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제정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다.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전체 내용 중에서 통일대비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마련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가 않다. 제시된 법안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제반 활동이 정권적 차원의 통일정책에 의한 것이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 명료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민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이념적 논쟁을 유보하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며,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정권적 차원의 정책인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통일정책이나 그와 깊은 관련이 있는 통일대비교육 목표 설정에서 ‘합의기반 취약성 문제’는 그 중요도나 그것이 교육 실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대통령령으로 보다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중요한 조문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예컨대, 국민투표나 국회동의 등).

셋째, 통일대비교육의 기본목표와 이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문제가 소홀히 취급된 느낌이다.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을 보면 제2장에 “통일대비교육기본계획등”으로 기본계획을 통일원장관이 수립하고 이를 위해 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있으나, 별도의 통일대비교육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어도 통일대비교육의 기본목표는 기본계획의 일부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한 조문으로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통일대비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속에서 명료히 하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왜곡·오도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대비교육의 목표와 성격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외적 장치(여건 등)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고 내적인 장치(예컨대, 교육내용 등)는 매우 소홀히 취급한 인상을 준다. 좀더 궁극적으로는 통일대비교육법을 먼저 제정하고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넷째, 통일대비교육의 '체계성과 지속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일대비 교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어떤 영역의 교육이건 그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내용-방법-평가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초로서(법적 근거로서) 기본목표가 명료히 기술되어야 하고 어떤 단계(예컨대 어떤 학교급,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가 기본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에서의 교육법과 같은 별도의 통일대비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이 체계성과 지속성의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같이 교육목표와 내용 및 방법의 체계성과 지속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통일대비교육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만일 통일대비교육법이 만들어진다면,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기본목표와 내용은 물론 관련된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특정 과목이나 영역으로서 통일대비교육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으며,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의 통일대비교육의 역할이나 비중이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대비교육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통일대비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가 보다 강조되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교육을 효율화하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화이며 이 다양화는 자율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교재나 방법,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운영 속에서는 교육의 수월성이나 효율성은 높아질 수가 없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설정된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대비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통일대비교육기본계획'에 대한 시범적 시행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이것을 시

행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설립 또는 육성과 과감한 정부 당국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이 통일대비교육을 오히려 형식화하거나 획일화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이 신중을 기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통일대비교육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들을 제거하고 통일대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에 마련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이 그에 포함된 입법방향이나 주요 내용의 정당성은 물론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며 과거의 통일대비교육을 일대 쇄신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개혁조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토론 1-3〉

현 학 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의장)

1.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96년 9월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신 통일교육에 관한 국정간담회에서 본인은 전국의 통일교육전문위원을 대표하여 통일교육의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통일교육의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시도록 국무총리께 건의하게 된 배경은 '8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900여명의 통일교육전문위원들이 연평균 625만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박용헌교수가 주제 발표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통일교육을 '정권안보교육'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교육효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일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투명하게 규정하고 그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확립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해 온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내무부가 주관하는 민방위교육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국가 차원의 체계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때로는 교육 담당자들이 사상과 이념을 달리할 때 의식화 교육으로 오도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한 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터전을 튼튼하게 하고, 정치적 통일을 이룬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동질성을 회복시키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 관해서는 정권의 교체나 정치쟁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여건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일대비교육 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용헌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입법화의 필요성으로 지적하신 ①합의기반의 취약성 극복, ②왜곡·오도 가능성 제거, ③통일교육의 내재적 취약성 극복, ④체계성과 지속성 보장, ⑤확산과 활성화 촉진, ⑥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등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2. 통일교육 업무의 관장문제

지금까지 실시해 온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또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이 미흡했다. 그동안 통일원이 '통일교육 기본방향'이라는 통일교육의 지침서를 만들어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통일원이 제시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에 의하며 제5조 ①항에 '통일원장관은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였으며, ②항에는 '통일원장관

이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다.'라고 하여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된 후 시행되면 통일원장관이 통일교육을 관장하게 되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통일교육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관장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법에 의해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설치·운영하는데 이를 문교성 산하에 두지 않고 내무성 산하에 두어 내무성장관이 독일의 정치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법은 1966년에 제정된 법률이지만, 1952년에 창설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본부가 1963년에 연방정치교육본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정치교육본부의 운영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사안들이 발생하자 정단간의 협의하에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법에 의해서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독일의 내무성장관 산하에 두되 문교성과 긴밀한 협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국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가치를 인식시켜 정치적 판단력을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갖도록 하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수립해서 추진하는 정치교육의 프로그램은 학술고문단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 선정하여 파견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담당자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에서 업무의 총괄적 관장은 통일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원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통일교육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박용현교수의 주장에 찬성하는 바이다.

제 II 주제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이 우 영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최근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제7차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도 통일교육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몇몇 학교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시민단체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독일통일 이후 활성화되었던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가 일종의 '거품'으로 판단되면서 통일문제를 보다 냉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일통일의 갖가지 후유증을 목격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 못지 않게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는가도 중요하며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의 붕괴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로서 통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탈 북한 주민들의 영향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급증하는데 비해서 이들을 남한사회에 정착시키는 준비는 미비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 결과 통일 이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과의 인간적인 통합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은 시행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시와 학점만이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풍토 하에서는 새로운 교과목의 증설로 학생들에게 수업의 부담만 더해질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과목을 어느 학과가 담당하여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학문간 이해 다툼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통일대비교육이 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도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과거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교육방향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

지금까지 방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통일·안보교육 및 통일대비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통일교육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정확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안보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체제경쟁을 전제로 북한의 대남침략에 대응하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과 북한체제의 호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대치국면으로 인해 통일교육과정에서 정부 통일정책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저해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통일논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셋째, 통일교육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또는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체제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일문제를 체제통합의 문제로 인식한 결과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체제비교나 통일정책의 적실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통일이 현실화 됐을 때 정치적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인간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넷째, 통일교육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이나 방법 설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북대치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은 타당성이 있었으나 다양한 사회집단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못한 결과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교육체제와의 연계성, 시민교육과의 체계적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채 파편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한 정부부처들간에도 통일교육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하였다. 또한 정치논리에 따라 통일교육이 강화되기도 하고, 경시되기도 하는 등 통일교육에 대한 일관된 체제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통일교육이 교육단계, 교육주체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기보다는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3.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의 방향

통일대비교육은 크게 두가지 방향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첫째, 통일대비교육은 문자 그대로 통일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둘째,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이후 한국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보편적이고 민족적인 가치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대비교육은 실용적이면서도 가치지향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민족발전에 기여하는 통일대비교육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두 개의 정치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계기로 왜곡되었던 민족적 발전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면 통일대비교육은 궁극적으로 통일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교육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통일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과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민족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통일대비교육은 두가지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이고 또 하나는 한국 민족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수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치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가치이다. 근대사회 이후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주의,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적 가치이다. 억압과 전쟁 등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평화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 평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풍요와 복지의 균형이다. 빈곤한 삶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지만 동시에 무차별적인 경쟁사회의 빈부격차 또한 반인간적인 조건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풍요로우면서도 복지가 보장된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양성의 인정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전제는 다원적인 사회집단의 존재이다. 정치·경제·문화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은 새로운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민족적 차원의 가치에는 다음의 몇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첫째,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민족화해의 가치가 필요하다. 과거의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체제 건설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분단체제하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반성과 과거 청산의 가치가 중요하다. 특히 역사발전의 역행하고 있는 봉건사상과 전체주의적인 사고 및 폭력수단의 정당화 등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와 전략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정을 유도해내야 한다.

셋째, 민족적 자긍심을 갖는 자세이다. 통일의 기본 전제는 민족의 재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이후의 국가발전도 민족이 기본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 지향성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통일이후의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정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통일대비교육

통일대비교육은 구체적 성과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나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통일대비교육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의 내외적 상황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에서 보여지듯이 통일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체제내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으며, 통일의 방법 및 과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을 둘러싼 내외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은 통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되지 않는다. 또한 날로 발전해가는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피교육생으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어렵다.

둘째,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통일관련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교육내용이 결정되었고, 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다원화된 사회구조를 고려한다면 통일대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대비교육은 특정 정치집단의 견해나 정치적 이념이 투영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대비교육도 중앙정부나 교육자치단체만의 몫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육, 일상생활의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일대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주체의 다양화는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자체가 또다른 형태의 통일대비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은 국가기관은 재정 보조, 교육 자료 제공 등 일종의 교육부문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을 담당하고, 교육자치단체는 학교교육을 관장하며, 시민단체

와 언론매체가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과거 통일교육이 정치나 체제 등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북한체제뿐만 아니라 북한사람들의 일상생활,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였을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 등 실천적인 차원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일대비교육의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형태의 다양화에는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포함한다. 과거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견해만 있는 것으로 전제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단이나 통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직업별로, 학력수준별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사회집단에 적합하도록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교실내의 강의뿐만 아니라 TV나 신문잡지 등 기존의 대중매체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New Media 등을 활용하는 교육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통일대비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통일대비교육의 활성화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통일대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일대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 교육과의 관계, 통일대비교육을 담당할 기구의 결정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통일대비

교육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통일대비교육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산하는 경우 일정한 수준의 국가보조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사업은 권력집단이나 정책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제도의 신설 못지 않게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 가운데 통일대비교육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폐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교육주체가 통일대비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 연결망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교육의 내용이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 등은 정부와 교육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일문제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교육의 담당자인 교육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연결되어 각각의 의견을 조율하고, 동시에 통일대비교육의 실시과정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통일대비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제도개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운영은 일차적으로 교육담당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교사가 통일대비교육을 담당한다면 과거 통일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통일대비교육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것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작업은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다양한 통일대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재와 부교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준에 맞는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교재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위성통신이나 케이블 TV,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과 같은 New Media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은 통일대비교육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통일대비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기존 자료의 정비와 data base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를 국내외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담당자나 피교육자가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통일 및 북한관계 자료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전국가적인 통일대비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통일대비교육의 기본적 토양이 될 수 있다. 전문 학술 연구의 성과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교재개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문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수가 있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교육은 단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단계에는 새로운 교육조건이 형성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 독일이나 예맨의 통일경험에서 알 수 있다. 즉 통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통일이나 통일이후의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준비작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북한체제의 상황을 생각하거나 독일 등 통일을 경험한 국가의 통일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통일에 대한 준비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대비교육은 통일 준비의 시작이다. 또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통합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통일의 주역은 정책담당자들 비롯한 일부가 아니라 민족구성원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통일역량을 고양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를 위해서도 통일대비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제도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더라도 실질적 교육효과는 통일대비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태도에 좌우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대비교육을 주도하는 정부당국이나 교육담당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사회전체가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과거의 강제적인 통일교육의 폐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토론 II-1〉

김 용 욱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회장)

이번에 개최되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 공청회의 지정토론에 본인이 전국에 있는 80여개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회장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점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요즈음 세상은 무엇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야만, 무엇인가 역할이 부여되는 세상인가 싶은데, 밖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대학단위로, 또는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토론의 광장을 여는데 심혈을 기울여 온 각 대학의 통일문제연구소장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 수렴해달라는 통일원 당국의 깊은 뜻으로 생각된다.

지난 8월 25일~26일 양일간의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가진 '21세기 한국을 여는 통일비전' 통일학술세미나에서도 이번 공청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취합하여 협의회장인 본인에게 위임하였던 내용들을 총괄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1. 법안에 대하여

먼저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취지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일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일교육법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통일원의 김석우 차관이 기초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이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지원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방향이 민간주도의 통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통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번에 통일원이 제시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이(제1조에서) 통일교육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또 제2조에서는 통일대비교육의 의미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에 있음을 밝힌 가운데 그 입법취지가 확실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인 통일을 위한 민주사회의 이념이나 복지국가건설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우파적인 배타적 논리나 소리로 잘못 인식되어온 이 땅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극좌는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극우의 논리나 세력도 탕평하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이며 서구의 정치사회에서 볼 수 있는 포용적이고 국민복지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가 통일교육이념으로 정립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대비교육기본계획은 통일원(통일원장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통일원이 통일교육을 주관하는 기능이 국민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관계설정이 법적·제도적으로 보다 명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통일이 되어 새로 확보된 지역에 대한 통일행정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 법안의 제2조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통일을 추진·준비하는 가치관, 태도의 함양에 있으므로 개개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3장에서 규정된 '통일대비교육의 촉진·지원'에 있어서, 교육요원의 양성, 교재의 개발에 있어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의 통일문제연구소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에는 연구소와 연계된 통일교육에 전문적 능력을 가진 많은 사회과 계열의 학과가 있으며, 특히 몇년 전부터 몇몇 대학에서는 북한학과를 선도적으로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과목이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전수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학이나 통일관계과목을 대학교육과정에서 모든 학과를 초월해서 이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통일문제 전문가나 관련기관의 관심사만이 아니다. 또한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 학생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여타 사회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바로 다음 후계세대가 될 대학생이므로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제도화가 시급히 요청되며 또한 전국 각 대학의 통일연구의 본산인 대학 통일문제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중요하다. 대학의 규모와 공·사립의 성격에 따라 통일문제관계연구소의 비중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상당수의 대학이 법정연구소를 설립했듯이 모든 대학의 연구소를 법정연구소로 그 지위를 강화하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이 소재한 전국 각 지역의 통일대비교육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수원이나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는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대학의 통일관계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을 주도해야 한다.

넷째로, 통일대비교육법안 제11조 1항에 규정된 내용중에는 통일원장관이 '기타통일대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대비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든지하는 규정은 통일대비의 지원적 성격이나 자발성과는 거리가 있는 조항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 제13조에 규정된 통일대비교육협의회의 설치에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또 다른 관변단체의 창설이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이는 법안의 입법 취지인 민간 수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성격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통일대비교육협의회의 인가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제기될 수도 있다.

다섯째, 제14조(시정명령)1항에는 통일원장관은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제4조의 규정("통일대비교육은 헌법에 규정한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개인

적·과당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할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칫 잘못 인식하면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민간수준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규제하는 고압적인 형태로 비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제4조의 규정대로 헌법에 규정된 기본질서를 부정한다면 현행 법률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오해를 빚을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4조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서 그대로 존치돼도 좋을 것 같다.

2. 논문에 대하여

이우영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몇가지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일종의 ‘안보교육’이었으며 통일교육에 있어서 남북한 체제비교나 통일정책의 적절성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인간통합에 대한 논의에는 상대적으로 경시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방법설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기존 통일교육이 비체계적이며 전반적인 교육체제와의 연계성, 시민교육과의 체계적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채 과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여기에서 토론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구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의 통일교육은 관변연구기관이나 연수원 교육담당자나 소수의 권력지향적인 지식인들이 한 일이지 대학의 통일관계 연구교수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존 통일교육의 이런 문제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자율성이 있었기에 이런 문제점을 수반하는 통일교육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그리고 주제발표자는 통일대비교육에 대해 대체로 좋은 제안을 했다.(주제발표

자의 발표가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한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면, 주제발표자는 “과거의 통일교육이 정치나 체제 등을 다루었다면 새로운 통일대비교육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체제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였을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 등 실천적인 차원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도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일대비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체제의 국민적 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정치교육, 체제교육이 가장 우선시되는 영역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를 몇가지 제시하면,

첫째, 남북한간의 통일문제가 민족성원들의 화해와 화합의 문제이지 남북한 정권담당자의 정략적 협상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통일정책의 전략적 구상이나 통일후의 북한체제 관리 차원문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 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나 규범의 문제이다.

셋째, 남북통일의 접근이 평화적 방법이어야 하며 다각적인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이 그 관건이며 정부수준의 협력 이전에 정경분리 차원에서의 민간수준의 다각적 교류와 남북간의 지식인들의 교류, 나아가서는 남북간의 기초지방단체 수준의 교류에 있음을 이미 통일을 이룩한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도 남북간의 통일의 정신적인 원동력은 민족공동체의식, ‘개방적인’ 민족주의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 II-2〉

박 석 균

(자유민주연구소 소장)

1. 논문에 관하여

가. 과거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

주제 발표자는 과거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통일교육은 문제점보다는 그 시대상황에서 긍정적 역할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과거의 통일안보교육이 남북한 대결의식을 고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실상과 대남전략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공헌한 면이 또한 있다. 그 바탕위에서 오늘 한국의 안보태세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는 냉전시대의 논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의 상황에서는 오늘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 것 뿐이 아닌가.

2) 발표자는 과거의 반공교육이 북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의 반공교육의 내용이 거의 진실임이 증명되고 있다. 굶주림, 인권유린, 관료주의, 비능률, 대남 적화야욕 등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을 천편일률적으로 '반통일적 자세'로 타기하면 오히려 북한의 진실이 은폐될 위험이 있다.

3) 발표자는 통일의 조건으로서 분단 유산의 청산 특히 전체주의적 정치문화와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주의야말로 북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나. 통일조국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관에 관하여

1) 인간의 존엄과 평등만을 강조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풍요와 복지의 균형에서도 시장경제원리의 장점보다는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자유경쟁이 상품의 품질향상과 가격인하 경쟁을 가져와 인간의 기본적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2) 평화의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전쟁과 억압만을 들고 계급간의 투쟁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교육내용에 관하여

1) 교육내용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과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통일과업은 다분히 국가전략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가기밀상 공개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교육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능한 한 많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2)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특히 New Media의 활용은 시급한 일일 것이다.

2. 법안에 대하여

가.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지원의 필요성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가 너무 적다. 새로운 이론의 개발도 없다. 이론은 모두 구미 학계의 것을 차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50여년간 분단상황에서 공산집단과 대치해 왔다면 한국은 공산권연구의 메카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우리는 황무지와 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분야를 전공해도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판매할 시장이 없는 것이다. 품질관리와 같은 것은 시장이 넓지만 통일·북한문제는 시장이 없다. 이 시장의 역할을 정부가 하여야 한다. 이 법안에 그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나. 탈북자는 통일교육의 귀중한 모델

통일교육은 북한 동포를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시민으로 순화함으로써 그 최종적 목표점에 도달한다. 북한 주민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탈북 망명자에 대한 체제순응교육을 실시하여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점도 찾아야 할 것이다.

다. 각종 시험에 통일관련 문제 출제 권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대학 입학시험, 공무원채용고시, 기업체 직원채용고시 등에서 가급적 통일관련 문제를 출제하도록 권고하여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한다.

라.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전국 15개 시도에 지회가 있고 235개 시·군·구에 지부가 조직되어 있다. 지회와 지부에는 사무국 요원이 있다. 회원은 22만. 지금도 매년 50만 명의 고등학생과 일반 시민 3만5천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통일대비 소양교육'을 지금 실시중에 있다. 북한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북한 여행방법, 북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설득하는 대화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이 연맹에 약간의 국고보조를 하고 교육내용을 강화·보강하도록 하면 통일대비교육을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토론 II-3〉

윤 병 익

(통일교육원 교수)

소련과 동구공산국가의 붕괴, 이에 따른 동서냉전체제의 와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 북한경제의 파탄 등으로 한반도 통일환경이 급변하자 대내외적으로 북한체제 붕괴론이 표면화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한반도 통일이 멀지 않아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른바 '통일대비교육'의 시급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은 다가오는데 우리 내부의 통일 수용태세는 미비되었다는 기본정세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이와 좀 다른 한반도 정세관을 말하고 싶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쉽게 다가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우리 민족의 당위적 통일은 남북이 자유민주체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한마디로 북한체제, 특히 정치체제의 변화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인데,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극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 비록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경우에도 사회문화적 체제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내재된 갈등이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므로 정치적 통일만으로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통합을 강조한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반도는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타결이후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직접 협상당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그리고 미국간의 3각구도하에서 실질적 협상정국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협상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부분적이거나 휴전선을

무실화시킴으로써 남북이 정치적 체제유지능력을 겨루는 제2라운드의 체제경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1라운드의 체제경쟁이 '경제력 경쟁'이었다면 제2라운드의 체제경쟁은 '정치력 경쟁'이 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국제적 보편성을 결여한 반민주적 독재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북한주민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결코 쉽게 와해될 체제가 아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 변화를 일으켜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통일이므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 남북한간의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도 이것으로 통일이 완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앞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정치적 통일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지난한 통일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적 정책대안은 우리 국민속에 잠재되어 있는 통일역량을 계발·조직하고 이를 동원하여 돌덩이처럼 굳어진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길 뿐일 것이다. 이같이 잠재되어 있는 통일역량을 계발·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한 교육이 이른바 통일대비교육일 것이다. 그런데 통일대비교육이란 용어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보다는 주어지는 통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뉘앙스가 강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뿐만 아니라 통일대비교육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려면 기존의 통일교육이란 용어와의 차별성을 명백히 드러내야 하는데 혹시 통일이 임박하고 있다는 상황변경을 이유로 제시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인 통일관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까 염려도 된다. 따라서 토론자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두되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즉,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시켜 실질적으로 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역량을 계발·조직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통일정책교육'쪽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름은 그렇다치고 발표자도 명확히 지적한 바와 같이 기왕의 통일교육의 내용이 지금에 와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기왕의 통일교육은 한마디로 남북한 체제비교를 통하여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우위성과 정당성을 국민 각 계층에 신념화시키는 체제안보 홍보교육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체제안보홍보교육을 통일정책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체제안보홍보교육이 무용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체제안보홍보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으로 완벽하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북간에 휴전선을 넘나드는 교류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체제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체제를 수호하려면 더욱더 강도높은 체제안보홍보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하에서 체제안보홍보교육에 안주하고만 있을 때는 분명 아니다.

따라서 체제안보홍보교육과 통일정책교육을 병행하되 대상을 2원화하여 체제안보홍보교육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통일정책교육은 전문적인 통일정책 추진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통일정책교육쪽으로 통일교육의 비중을 옮겨야 한다.

이상의 판단을 기초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체제안보홍보교육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간다. 홍보논리를 지양하고 질높은 북한실태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시켜 간다.

2. 통일정책교육

가. 입법, 사법, 행정부는 각각 북한의 '카운터 파트'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축적해가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간다. 특히, 행정부의 각급 직급은 북한 정무원의 상응

하는 부서와 직급의 업무를 파악하고,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행정부산하 각급 교육기관은 통일정책교육으로 소속부처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나. 학교교육기관은 각 교육과정에 따른 조직적 체계적 통일정책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정책 추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다. 기업연수기관 등 각급 사회교육기관은 응분의 통일정책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의 상응하는 영역의 업무를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각 기업체 및 사회기관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라. 통일교육원은 기존의 체제안보홍보교육보다는 통일정책교육요원 등 통일정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마. 정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통일정책교육 전문인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증폭될 통일정책교육 수요를 충족시킨다.

〈토론 II-4〉

차 우 규

(서울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회장)

이우영 연구위원은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에 관한 주제발표 글에서 기존의 어떤 것보다도 진일보한 통일대비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대비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국내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대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1. 발표자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통일대비교육’과 ‘통일교육’을 여러 부분에서 혼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뚜렷치 않다는 점이다. 만약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두 용어 중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발표자는 기존 통일교육에 대한 분석에서 그 문제점의 하나로 기존의 통일교육이 일종의 안보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본 토론자는 이를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꿈을 미래성으로 표현하던 3살 난 어린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이미 성인이 된 그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가 3살

시절에 모래성을 쌓는 행동은 그의 발달 과정상 필요한 행동이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인이 된 후 그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물론 그것은 유치한 행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른이 된 시점에서 3살 적의 행동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교육이나 통일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3살짜리 수준의 정부에게 성인 수준의 행동을 요구한다면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 토론자의 주장이 과거 우리의 통일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 국가의 안보상태와 발전정도에 비추어 과거 우리의 통일교육이 정당하게 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발표자는 통일대비교육은 실용적이면서도 가치 지향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통일대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내외적 상황 변화와의 밀접한 관련, 국민적 합의, 교육 주체의 다양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천적 문제의 중점적 지도,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주체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교육의 주체로 국가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재정 보조와 교육자료 제공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기능보다는 교육의 행정적 지원 내지 환경적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료 제공이라는 표현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료는 중앙정부에서 수시로 공개하고 보급하되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은 학교나 언론 및 사회단체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통일대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 -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한국 민족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수한 가치 -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특수한 가치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다소 안타깝다. 앞으로는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가치로는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만 특히 발달한 특수한 가치(효, 충, 예절, 공동체 의식 등)를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4.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의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북한 공산체제 속에서 살아온 그들을 우리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동질성 회복 및 실질적 의미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후의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인간 관계를 상정하여 보고, 이를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하여 문제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방안 등을 학생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통일대비교육을 논할 때 우리는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과 연수기관 및 연구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교육기관은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교육은 우리 학교 사회의 교과위주의 풍토상 '도덕'과에서 현행처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그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방식과 신문, TV,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미디어의 활용교육(MIE)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통일교육을 특정 교과로서 지도하지 않고 범교과나 탈교과로서 지도하게 된다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무의미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제2차 교육과정 개정시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주체는 도덕과에서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도덕실' 혹은 '통

일대비교육실'을 만들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자료를 축적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통일관련 학회나 연구회 및 유관 사회단체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대비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대상자는 아동과 청소년들로서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반면, 사회교육의 실시대상은 자신의 정체성과 주관이 분명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수 기관은 좀 더 특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연수는 강사 위주의 강의식이나 통일전망대, 판문점, 땅굴 등의 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보니 다소 지루하고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사를 유능하게 연수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대비교육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연수기관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각각의 연수기관들에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을 특화(特化)하여 교사들이 희망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라는 연수기관이 북한의 언어, 문화, 역사, 지리, 경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B라는 연수기관은 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며, C라는 연수기관은 남북한 통일정책과 논의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식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교사들의 흥미 유발과 전문성 제고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통일연수기관과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나 서울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등의 교과교육 전문연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연수내용 및 방법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워크숍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연수기관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연수기관을 정부기관이나 소수의 정부유관기관 등으로 국한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통일대비교육도 이전의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통일논의의 빈곤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연구 자체는 다양성을 허용하되, 여러 단계의 조절장치와 합의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안들을 좀 더 유연하고 민주적이며 타당성있는 안으로 다듬어가고, 이렇게 형성된 합의내용을 전문화되고 선별된 연수기관을 통해 연수하며,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교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하여 실시해 나갈 때 통일대비교육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 부 록 〉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대비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대비교육”이라 함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일대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통일대비교육의 합헌성 및 순수성) 통일대비교육은 헌법에 규정한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개인적·파당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통일대비교육기본계획등

제5조(통일대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원장관은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통일원장관이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6조(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일대비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통일대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일대비교육의 촉진·지원

제8조(국가의 임무)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대비교육의 실시, 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지원, 경비의 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대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대비교육의 실시를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원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요원 및 교재 등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통일대비교육의 실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대비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국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통일대비교육을 지원한다.

제10조(학교에서의 통일대비교육 지원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의 통일대비교육을 지원한다.

②국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통일대비교육의 요청) ①통일원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대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대비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대비교육 대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해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대상의 선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일대비교육협의회) ①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대비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대비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시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 . 부터 시행한다.

메 모

예 모

메 모

메 모

예 모

메 모

메 모

메 모